옥천군 공고 제2020-1423호

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30일

옥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정이유

○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제정목적 및 지정대상(안 제1조 ~ 제3조)

○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(안 제4조 ~ 제5조)

○ 낚시통제구역의 고시, 지정해제·변경절차(안 제6조 ~ 제7조)

4. 제정근거

○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6조(낚시통제구역)

5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542, FAX : (043)731-2914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
○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낚시통제구역”이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2.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낚시통제구역의 지정)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, 주민생활의 불편해소,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,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)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, 계절적 영향, 일출,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,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)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,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(공람, 열람)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,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※ 초안의 의견수렴은 지정절차로 옮김

제6조(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) 군수는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옥천군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그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 ※ 통제구역 고시를 별도의 조로 규정

제7조(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·변경 절차)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 용	제목 :		
	의 견		
	기 타		

「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옥천군수 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